

<부표 3> 산업재배치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보조금 제도

| 구 분 | 입 지 지 역          | 유 도 지 역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 별 유 도 지 역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| 보조단가(한도액)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단가(한도액)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례 공업단지<br>보조단가(한도액)              |
| 이 전 | 공업단지 등           | 5,000엔/m <sup>2</sup><br>(1억엔)  | 7,500엔/m <sup>2</sup><br>(1억5천만엔) | 10,000엔/m <sup>2</sup><br>(2억엔)   |
| 신증설 | "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000엔/m <sup>2</sup><br>(1억엔)    | 7,500엔/m <sup>2</sup><br>(1억5천만엔) |
|     | 지역정비진흥공단의 단<br>지 | 2,500엔/m <sup>2</sup><br>(5천만엔) | 7,500엔/m <sup>2</sup><br>(1억5천만엔) | 10,000엔/m <sup>2</sup><br>(2억엔)   |

- 주 1) 보조금액은 공장 또는 사업소면적에 m<sup>2</sup>당 보조단가를 곱한 것임.  
 2) 특례공업단지란 특별유도지역내의 공업단지로 원칙적으로 1978년말까지 이미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인 것임(산업재배치 촉진환경정비 보조금 규칙)

터 5년간 또는 이전취소일

- 감수보전 한도액

· 과세면제시 : (과세표준액 × 80/100) : 道縣(市町村은 75/100)

· 불균일과세시 : (과세표준액 × [0.014-(불균등과세세율)] × 80/100 : 道縣(市町村은 75/100)

○ 지방채 발행상의 우대조치

- 기채에 대한 특별배려(공업재배치 촉진법)

-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도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장용지

조성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기채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절히 배려함

2) 중앙정부의 보조금

(가) 산업재배치 촉진환경정비 보조금(통산성)

○ 제조업, 두뇌입지법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전촉진지역에서 유도지역으로 이전 또는 유도지역에 공장 또는 사업소를 신증설할 경우 다음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